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문 경 원

나.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및 추가품목 신설(안 제6조, 별표 1)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 고
폐소화기	15kg 이상	7,000	상위법 개정 따른 항목추가
	7kg ~ 15kg	5,000	
	3.3kg 이상	3,000	
	3.3kg 미만	2,000	
침대(돌, 옥, 황토)	2인용	30,000	품목신설
	1인용	20,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	
카시트	모든규격	3,000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비데	모든규격	3,000	
타이어	림외경 19인치 이상	5,000	
	림외경 19인치 미만	3,000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제6조, 별표 1)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 종량제 봉투 규격 정비(안 제15조, 별지 서식)

구 분	음식물쓰레기봉투		불연성(매립용)마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규 격	3ℓ, 10ℓ, 20ℓ	20ℓ	20ℓ, 30ℓ	10ℓ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종량제 봉투 규격 삭제
- 본래 취지에 맞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만
사용토록 불연성마대 용량 축소

○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관리원으로 변경(안 제16조)

- 구미시청노동조합 단체 협약

○ 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안 제17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처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권장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공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